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서영교·권칠승·윤준병

박희승 • 이해식 • 이연희

박홍배 · 김종민 · 안호영

강유정ㆍ허 영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 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·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%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).

법률 제 호

#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 항) 중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 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(종전의 제9항)제1호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1항(종전의 제10항) 중 "제9항"을 "제10항"으로 한 다.

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

행 이후 통신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9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10항"으로 한다.

제122조의3제1항 중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9항"을 "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10항"으로 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① ~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<신 설>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서비 스 요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 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 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 5항----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 는 종전의 배우자 · 부양가족 · 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 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

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	
한다.	
<u>⑥</u> 제1항부터 <u>제4항</u> 까지의 규	<u> ⑦</u> <u>제5항</u>
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	
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.	
<u>⑦·⑧</u> (생 략)	<u>⑧</u> ・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
	과 같음)
⑨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	<u> </u>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	
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	
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(이	
하 "표준세액공제"라 한다)한	
다.	
1.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	1
<u>제6항</u> , 제52조제8항 및 「조	- <u>제7항</u>
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제2	
항에 따른 소득공제나 세액공	
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:	
연 13만원	

2. (생략)

① 제1항부터 <u>제9항</u>까지의 규 정에 따른 공제를 "특별세액공 제"라 한다.

⑪ (생 략)

2. (현행과 같음)
①제10항
① (현행 제11항과 같음)